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2812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7. 1.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2024. 7.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4. 7. 17.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사유

- 동해면 외곡리의 구절폭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신규로 결정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내용

- 건명: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
- 위치: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일원
- 면적: 3,307㎡
 -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 해제)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4. 청취경위

- 2024. 5. 3.: 군관리계획 입안
- 2024. 5. 16. ~ 5. 31.: 주민 열람공고
- 2024. 5. 16. ~ 6. 25.: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4. 7.: 군의회 의견 청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6. 본문: 붙임과 같음

7.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제출 근거

-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동해면 구절산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

- (위 치)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일원
- (면 적) 3,307㎡
-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 해제)
 - 군계획시설(주차장) 변경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구절폭포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마을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9. 토 론: 없음

10. 심사결과: 2024. 7. 17. 찬성의견

11.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